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. 11. 8 선고 2018가단450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4. 4. 28. 접수 제240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1999. 2. 8. 접수 제87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동휘

별지